

##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64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최근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임에 따라 중산·저소득층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당초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을 2022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2022년 7월 31일까지 휘발유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에서 리터당 423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5원에서 리터당 300원으로 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ooh471@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